

질 문 답 변 서

(청소행정과)

질문의원	김 복 동 의원 (종로5.6가동)
【질 문】 1. 건축 준공이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시 정화조용량 부족분 증설 여건이 곤란한 경우 2. 비가 올때 정화조를 하수도에 무단방류 방치 3. 건축물 불법 증. 개축 및 무단용도 변경시 정화조 용량 부족분 방치	
【답 변】 ○ 문화복지 환경1동구 건설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복동 의원님의 정화조 문제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축 준공이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 부족분의 증설 요건이 곤란한 경우 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못하는 이유는 건물의 용도는 가변적이나 정화조용량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건축물 신축시 건물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를 감안한 충분한 용량으로 시설해야 하나 건축주의 인식 부족 및 비용절감(건축비,정화조수수료) 차원에서 여유분 감안치 않고 설계 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되며,	

신축시 건물주에게 충분한 정화조용량을 반영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화조 용량이 20% 범위내의 부족한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화조 증설 없이 용도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비가 올때 정화조를 하수구에 무단방류 한다는 질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이 살기좋은 환경1 등구를 만들기위해 홍제천 가꾸기 등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특히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질오염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이후 현재까지 정화조 설치 없이 분뇨 무단방류 및 정화조 무단설치.무단폐쇄등 위반자에 대해서 10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처분 및 고발조치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축물 불법 증.개축 및 무단 변경시 정화조용량 부족분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 및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나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인력등 어려운 여건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시정하기위한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